

대구지방법원 2020. 12. 9 선고 2019나32402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0. 12. 9 선고 2019나324020 판결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. 10. 29 선고 2019가단3538 판결

전문

원고,항소인 A

피고,피항소인 B

변론 종결 2020. 11. 11

판결선 고 2020. 12. 9

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. 10. 29. 선고 2019가단3538 판결

주문

1. 이 법원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,가. 포항시 남구 C 대 397m123중 별지 감정도 표시 1, 2, 3, 4, 5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기부분 불럭조 창고 16㎡를 철거하고,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,나. 2011. 3.

2.부터 위 가.항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, 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주문 기재와 같다(원고는 추후 집행을 위한 측량감정을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, 당심에서 측량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)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지적측량감 정축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는 2011. 3. 2. 포항시 남구 C 대 397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,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 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, 2, 3, 4, 5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기부분 16㎡ 지상에 ब्ल록조 창고(이하 '이 사건 창고'라고 한다)를 건축하 여 점유·사용하고 있었던 사실,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창고 부분 토지의 차 임 상당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1. 3. 2. 이후 월 13만 원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창고를 건축하여 그 부분 토지를 무단 점유·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,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,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1. 3. 2.부터 이 사건 창고 부분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월 1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

원고가 당심에서 측 량감정을 한 후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따라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대규판사 권준범판사 예혁준

별지